

의안번호	제3114호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6. 7. 10.

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114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6. 7. 10.

제 출 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법제처 권고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, 수탁자에게 부과하던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종사자의 정년에 대해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준용(안 제8조제2항)

나. 보험 가입 주체 변경(안 제22조)

- ‘군수 또는 수탁자’를 ‘군수’로 변경

다. 시설장의 명칭을 시설명과 일치시키고,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 명칭 정비(안 제5조~제23조)

라. 보수지급일 및 근무일의 현행 반영(안 제9조 및 제10조)

마.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정비(안 제10조 및 제12조)

바. 띄어쓰기 정비(안 제1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9조
- 2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4조
- 3) 성평등가족부 지침[청소년사업안내(Ⅱ)]

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-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13931(2026. 3. 27.)호]

라. 기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6-735호

가) 예고기간: 2026. 3. 30.~2026. 4. 20.(21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 제출 3건

입법예고 안	수정안(의견제출안)	검토결과(미반영)
제8조(신분보장과 정년) ② 종사자의 정년은 「 <u>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</u> 」 <u>제19조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침</u> 을 준용한다.	제8조(신분보장과 정년) ② ----- 「 <u>지방공무원법</u> 」 -----.	□ 계약직 근로자 등은 공무원과 구별되는 자로서 복무, 장제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근거없이 「 <u>지방공무원법</u> 」을 준용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「 <u>지방자치법</u> 」 제28조에 따른 조례 제정 범위를 일탈하는 문제가 있음

제10조(보수 등) ① 종사자의 보수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보수기준에 따라 지급하되, <u>매월 말일에 지급한다.</u> <u>말일이 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</u>	제10조(보수 등) ① ----- -----, <u>공무원 보수지급일</u> -----.	☐ 현재 상담복지센터 근무자는 고성군 공무직근로자로 「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」 적용 대상임. 따라서 동일 규정 제45조(임금지급)에 근거하여 매월 말일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.
제12조(징계) 종사자의 징계는 「고성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」을 준용한다.	제12조(징계) ----- ----- 「고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	☐ 「고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」은 2017년에 폐지되었음.
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(이하 “소장”이라 한다)”를 “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소장”을 각각 “센터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여성가족부”를 “성평등가족부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소장의 역할)”을 “(센터장의 역할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소장”을 “센터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종사자의 정년은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준용한다.

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소장”을 “센터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본문 중 “여성가족부”를 “성평등가족부”로, “공무원 보수지급일”을 “매월 말일”로 하고, 같은 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말일이 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제10조제1항 단서 중 “소장”을 “센터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고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」”를 “「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여성가족부”를 “성평등가족부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「고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」”을 “「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2호 중 “사 유”를 “사유”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중 “여성가족부”를 “성평등가족부”로 한다.

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군수 또는 수탁자”를 “군수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「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23조 중 “여성가족부”를 “성평등가족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구성) ①상담복지센터에는 상담복지센터의 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한다)을 중심으로 상담지원팀, 통합지원팀을 편성하여 운영한다.	제5조(구성) ①----- ----- 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자격과 임용) ①소장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임용하여야 한다. 다만, 고성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이 겸직할 수 있다.	제6조(자격과 임용) ① <u>센터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
②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소장 및 상담복지센터 직원(이하 “종사자”라 한다)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의 별표 2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<u>여성가족부의</u> 지침을 준용한다.	②----- <u>센터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<u>성평등가족부</u> ----- -----.

제7조(소장의 역할) 소장은 상담
복지센터를 대표하고, 상담복지
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.

제8조(신분보장과 정년) ① (생
략)

② 종사자의 정년은 「지방공무
원법」을 준용한다.

제9조(종사자의 복무) ① (생략)

② 토요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
부터 오후 5시까지, 야간 근무
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
까지로 한다. 이 경우 토요일 근
무자는 주중에, 야간 근무자는
다음 날 오전 근무를 휴무할 수
있다.

③ 소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
적인 상담업무를 위하여 필요한
경우 근무시간외 근무와 휴일
근무를 명할 수 있다.

제10조(보수 등) ① 종사자의 보수
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
보수기준에 따라 지급하되, 공

제7조(센터장의 역할) 센터장---

-----.

제8조(신분보장과 정년) ① (현행
과 같음)

② 종사자의 정년은 「고용상
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
진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성
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침
을 준용한다.

제9조(종사자의 복무) ① (현행과
같음)

<삭 제>

② 센터장-----

-----.

제10조(보수 등) ①-----
-- 성평등가족부 -----
----- 매

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

<후단 신설>다만,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된 소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

②종사자의 출장 등에 대한 실비는 「고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」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경력산정 등) 종사자의 호봉획정 및 승급 등을 위한 경력산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준용한다.

제12조(징계) 종사자의 징계는 「고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9조(위탁운영의 취소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. 위탁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1. (생략)
2. 수탁자가 관리·운영능력이 없거나 상담복지센터를 운영

월 말일-----.

말일이 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----- 센터장-----.

②-----
--- 「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-----
--.

제11조(경력산정 등) -----

---- 성평등가족부 -----
-----.

제12조(징계) -----
「고성군 공무원직근로자 관리 규정」-----.

제19조(위탁운영의 취소) -----

-----.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
할 수 없는 <u>사유</u> 가 발생하였을 경우	----- <u>사유</u> ----- -----
3.·4. (생략)	3.·4.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·운영) ① (생략)	제20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·운영에 관하여는 <u>여성가족부 장관</u> 이 정하는 지침을 준용한다.	②----- ----- <u>성평등가족부</u> ----- -----.
제22조(보험가입) <u>군수 또는 수탁자</u> 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,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	제22조(보험가입) ① <u>군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<신설>	② <u>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</u>
제23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, <u>여성가족부 장관</u> 이 정하는 「청소년사업 안내 지침」,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」, 「고성군 공유재산 관리	제23조(준용) ----- ----- --- <u>성평등가족부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조례」등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.	----- --.
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

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-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
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
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

참고

관계법령(발체)

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

제19조(정년)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.
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. [전문개정 2013. 5. 22.]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4조(손해보험 및 공제계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(共濟)에 가입하여야 한다.

1. 건물, 선박

2.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·기계 및 기구

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(有償)·무상(無償)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.

□ 성평등가족부 지침[청소년사업안내(Ⅱ)]

다. 근로관계

- 직원 채용시 임금,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 체결
- 근로계약 체결 후, 임금, 소정근로시간 등의 내용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을 근로계약서 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작성하여 재교부해야 함(근로기준법 제17조)
- 정년: 만 60세 이상(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)